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(조지연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909

발의연월일: 2024. 7. 18.

발 의 자:조지연·엄태영·강대식

구자근 • 고동진 • 강선영

윤재옥 • 백종헌 • 김종양

박충권 • 권성동 • 김정재

임이자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상 드론 보험제도는 드론을 소유한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에 한하여 의무적인 가입대상으로 삼고 있음.

하지만 대여업자 등 사업자를 제외하고 개인이 촬영이나 레저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소형 드론의 경우 보험 가입이 강제되고 있지 않 아 드론 사업자를 제외한 대다수 드론 운용자들이 사고 발생 시 가해 자 및 피해자 모두에게 큰 위험요인으로 작용하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음. 따라서 최근 급증하고 있는 드론 사고로 최대 이륙증량 2k g를 초과하는 드론을 의무 신고 대상으로 제도화 하는 등 사고를 예 방하고 안전한 항공운항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최대 이륙중량 2kg를 초과하는 드론 운용자들이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70조).

법률 제 호

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항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0조제4항 중 "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한 국가, 지방자치단체, 「공 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"을 "최대이륙 중량 2kg을 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한 자는" 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70조(항공보험 등의 가입의무)	제70조(항공보험 등의 가입의무)		
① ~ ③ (생 략)	① ~ ③ (현행과 같음)		
④ 초경량비행장치를 초경량비	4		
행장치사용사업, 항공기대여업			
및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사용			
하려는 자와 무인비행장치 등			
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<u>초경</u>	<u>최대</u>		
량비행장치를 소유한 국가, 지	이륙중량 2kg을 넘는 초경량비		
방자치단체, 「공공기관의 운영	행장치를 소유한 자는		
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			
<u>공공기관은</u> 국토교통부령으로			
정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			
하여야 한다.	·.		
⑤ (생 략)	⑤ (현행과 같음)		